

7. 준재심

☐ 준재심

준재심 청구취지

1. ○○지방법원 2007가단114 건물명도사건에 관하여 2009. 4. 28. 작성된 화해조서를 취소한다.
2. 원고(준재심 피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본소 및 재심소송 총비용은 모두 원고(준재심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참조판례] 제소전 화해조서를 대상으로 한 준재심의 소에서 민사소송법 제430조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제소전 화해에 있어서는 종결될 본안 소송이 계속되었던 것이 아니고 종결된 것은 제소전 화해절차 뿐이므로, 이러한 제소전 화해절차의 특성상 민사소송법 제43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소전 화해조서를 대상으로 한 준재심의 소에서는 민사소송법 제430조가 적용될 여지는 없고, 재심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그 화해의 내용 되는 법률관계의 실제 관계의 부합 여부를 따질 수도 없어 화해조서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8. 10. 9. 선고 96다44051 판결)

[참조판례] 재판상화해조서 또는 제소전화해조서의 효력을 재심 또는 준재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룰 수 있는지 여부

재판상화해조서 또는 제소전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당사자 사이에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재심 또는 준재심의 절차에서 취소 또는 변경되지 않는 한 그 화해의 효력은 다룰 수 없다.(대법원 1990.12.11. 선고 90다카24953 판결)

☐ 준재심(결정)

준재심 청구취지

1. ○○지방법원 2000타경1234 부동산임의경매신청사건에 관하여 2000. 3. 4. 선고한 경락허가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이 건에 관하여 2000.2.27. 김○○이 신고한 경매신고는 이를 불허하고 재경매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확정된 대법원의 결정에 대한 준재심신청의 요건

확정된 대법원의 결정에 대한 준재심의 신청은 민사소송법 제431조에 의하여 동법 제422조 소정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으로 신청인의 주장하는 사유가 이에 해당하지 않을 때에는 그 신청은 부적법하다.(대법원 1987.3.26. 선고 86사3 판결)

☐ 준재심(조정조서)

준재심할 조정조서의 표시

(조정조항)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0. 2. 23.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한다.
2. 조정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준재심 청구취지

이 건 조정조서를 취소한다.

라는 재판과 기타 적절한 재판을 구함

[참조판례] 적법한 기간 내에 제출된 재항고이유서에 사건번호가 잘못 기재되어있었던 관계로 재항고이유서가 기록에 편철되지 아니하여 재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항고를 기각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431조, 제422조제1항 제9호 소정의 준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항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제출된 재항고이유서에 사건번호가 잘못 기재되어 있었던 관계로 재항고이유서가 사건의 기록에 편철되지 아니하여, 준재심대상결정이 재항고장에 재항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재항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재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재항고이유에 관하여 판단하지 않고 재항고를 기각한 경우, 준재심대상결정은 결정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하였으므로 이는 민사소송법 제431조, 제422조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는 준재심사유가 된다.(대법원 2000. 1. 7.자 99재마4 결정)

☐ 준재심(화해조서)

준재심을 구하는 화해조항의 표시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0. 3. 20까지 금100,000,000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원고에게 서울 ○○구 ○○동 12-5 대 35㎡ 및 동소 12-7 대 27㎡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2. 원·피고는 소유건물 접경선에 대하여 상호양보하기로 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

준재심 청구취지

이 건 화해조서를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합니다.